

의안번호	2200089
의 퇴 인	이원택의원
회 답 일	2024. 6. 14.
추 계 번호	24B030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음 3. “ <u>공공비축양곡</u> ”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u>미곡</u> , <u>밀</u> 및 <u>콩</u>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함	의무규정
2	안 제3조(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u>양곡수급계획</u>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4.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양곡의 <u>적정 자급목표</u> 및 <u>적정가격</u> 에 관한 사항 * <u>적정가격</u> : 양곡의 수확기 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기준가격(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의무규정
3	안 제16조(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u>예상생산량</u> (이하 “ <u>초과생산량</u> ”이라 함)을 수확기(10월부터 12월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u>매입 가격</u> 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 가격으로 함(제4항) 1. <u>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u> 2. 제1호 외의 요인으로 해당 연도 단경기(7월부터 9월까지를 말한다) 또는 수확기의 미곡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100분의 5 이상 하락한 경우	의무규정
4	안 제16조의3 신설(양곡수급관리위원회)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u> (이하 “ <u>위원회</u> ”라 함)를 둔(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16조의4 신설(적정가격 보장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의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 범위에서 <u>지정된 품목의 가격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u> (이하 “ <u>적정가격보장제</u> ”라 함)를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적정가격보장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양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함(제1항)	재량규정
6	안 제16조의5 신설(미곡의 수 급안정 및 타작 물 재배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와 연계하여 벼 및 벼 이외의 작물(이하 “<u>타작물</u>”이라 한다)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u>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함</u>(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곡이 초과생산된 경우 초과생산된 미곡이 재배된 면적에 대하여 <u>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u>. 이 경우 사업에 참여하여 <u>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u>(제2항)	의무·재량 규정

II.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 미대상: 법 시행령에서 공공비축양곡으로 정하고 있는 밀 및 콩을 법률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공공비축양곡 매입 예산을 편성하여 일정 규모의 미곡, 밀, 콩을 매입중 ※ [참고자료 1] 공공비축양곡 매입 실적 및 계획 참고
2	안 제3조(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 미대상 － (양곡의 적정 자급 목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자급률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용역비용이 일부 소요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생산량·재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배면적·소비량과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참고자료 2] 2027년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률 목표 참고(농림축산식품 고시) － (적정가격) 농림축산식품부 및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설정 가능하여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3	안 제16조(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안 제16조의3 신설(양곡수급관리위원회)	• 미대상: 법 제16조제5항¹⁾ 및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²⁾에 따라 운영중인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음 －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생산자·유통·소비자 단체,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중(2020.9.2, 출범) － 농식품부(차관(위원장), 식량정책관), 기재부(민생경제정책관), 농업인단체(5명), RPC단체(3명), 소비자단체(2명), 전문가(2명), 유관기관(농협경제지주, 농경연)
5	안 제16조의4 신설(적정가격보장제)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6	안 제16조의5 신설(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 재배 지원 등)	

2. 상세 사유

가.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미곡 초과생산량 시장격리시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으로 적용(안 제16조제4항 및 같은 항 제1·2호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어 농업협동조합등으로 하여금 미곡 초과생산량을 현행 수

1) 법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매입·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판매의 시기·절차, 매입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위원회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양곡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확기 산지쌀값이 아닌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으로 매입하게 하고, 법 제16조제6항³⁾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함

-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등은 매년 9~11월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로 발표중⁴⁾
 - 포대벼(건조벼): 통계청에서 조사한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⁵⁾으로 환산한 가격(전국 단일가격 적용)
 - 산물벼: 포대벼(건조벼) 매입가격에서 포장비용(포장재 및 포장임)을 제외한 비용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초과생산량, 매입 가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

- 추가재정소요 = $\sum_t \text{초과생산량} \times \text{매입 가격}_t = \sum_t (\text{초과생산량} \times \text{매입가격})_t$
 - 이때 t 는 추계기간 5년
 -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으로 산정

□ 그런데 쌀 생산량은 기온, 강수량, 일조시간 등 기상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향후 생산량을 예측하기 어렵고, 수요량 역시 쌀값, 소비성향 등에 의한 영향으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초과생산량의 매입가격을 공공비축미곡 방식으로 정하는 경우,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 쌀값을 기반으로 결정되나, 현시점에서는 향후 수

3) 법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4) 예를 들어 2023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금은 「2023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4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76호, 2023.10.25.)를 따름. 참고로 2023년도 공공비축미곡 포대벼 및 산물벼의 매입가격은 다음과 같음

[2023년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 포대벼

$\begin{aligned} \text{매입가격} \\ (\text{포대벼 } 40\text{kg}) &= [\text{수확기 전국평균 산지쌀값}(80\text{kg}) - \text{가공임}(8,002\text{원})] \times \frac{40\text{kg}}{80\text{kg}} \times \frac{72\%}{(\text{도정수율})} \end{aligned}$
--

• 산물벼

$\begin{aligned} \text{산물벼}(40\text{kg}) \text{ 매입가격} &= \text{포대벼}(40\text{kg}) \text{ 매입가격} - \text{포장비용} * (798\text{원}/40\text{kg}) \\ * \text{포장비용 } 798\text{원}/40\text{kg} & (= \text{포장재 } 540\text{원}, \text{포장임 } 258\text{원}) \end{aligned}$

5) 조곡(粗穀)은 수확한 그대로의 알곡이며, 정곡(精穀)은 도정된 곡물(쌀, 보리쌀 등)을 지칭
(자료: 농촌진흥청 농업용어사전 <<https://www.nongsaro.go.kr/>>)

확기 평균 산지 쌀값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초과생산량 매입에 따른 용자 규모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쌀 초과생산량, 초과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 등 현황은 [참고자료 3] 쌀 생산량 현황 및 수확기 산지쌀값 현황, [참고자료 4] 시장격리곡 매입 현황 참고

나. 적정가격보장제(안 제16조의4 신설)

□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가격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 즉 ‘적정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적정가격) 양곡의 수확기 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기준가격

□ 개정안에 따른 차액 지급금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상품목별 양곡 생산량 및 시장가격, 품목별 양곡 시장가격의 적정가격 미달 여부, 차액(=적정가격-시장가격)의 지급비율(전부 또는 일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

$$\begin{aligned} \text{추가재정소요} &= \sum_{i,t} (\text{품목별 양곡 가격 차액보전})_{i,t} \\ &= \sum_{i,t} (\text{양곡 적정가격} - \text{양곡 시장가격})_{i,t} \times \text{지급비율}_{i,t} \times \text{대상 물량}_{i,t} \end{aligned}$$

- 이때, (양곡 적정가격 - 양곡 시장가격) > 0인 경우에 해당
- t 는 추계기간 5년, i 는 지원대상 품목(예: 쌀, 밀, 콩 등)

□ 그런데 지원대상 양곡 품목 및 물량, 품목별 양곡 적정가격 및 시장가격, 지급비율은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하고, 적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⁶⁾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합리

6)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의2. “적정가격”이란 양곡의 수확기 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적정가격보장제와 유사한 변동직접지불제를 운영한 바 있음([참고자료 5] 변동직접지불제 참고)

다.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 재배 지원 등(안 제16조의5 신설)

□ 개정안에 따라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벼 이외의 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곡이 초과생산된 경우 초과생산된 미곡이 재배된 면적에 대한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및 참여 농업인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타작물은 벼 이외의 작물로 조사료(粗飼料)⁷⁾, 일반·꽃거름, 두류, 휴경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타작물 품목군별 재배면적 및 타작물 재배 지원단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

$$- \text{추가재정소요} = \sum_{i,t} (\text{타작물 재배면적}_{i,t} \times \text{지원단가}_{i,t})$$

• 이때 t 는 추계기간, i 는 타작물 품목

□ 그런데 타작물 재배면적, 품목별 면적당 지원단가는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하고, 타작물 재배지원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⁸⁾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2020년 한시적으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⁹⁾을 실시한 바 있음([참고자료 6] 논타작물 재배 지원제도: 2018~2020년)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기준가격을 말한다.

7) 조사료: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되는 사료, 청초, 건초 따위 (자료: 농촌진흥청, 농사로포털, 「농업용어사전」)

8) 안 제16조의5(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 재배 지원 등)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기존 쌀 농가가 쌀을 대체하여 논에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시 단위면적 당 일정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2018~20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한시사업)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2018			2019				2020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액 (A)	이·전용 (B)	집행액 (C)	집행률 [C/(A+B)]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 (B/A)
136,829	67,880	49.6	150,479	△59,700	83,682	92.2	54,992	54,989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1] 공공비축양곡 매입 실적 및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공공비축양곡 매입 실적(2019~2023년) 및 계획(2024년)>

(단위: 톤, 원/kg, 백만원)

공공비축양곡		미곡 ¹⁾		밀 ²⁾	콩 ³⁾
		포대벼	산물벼		
2019	매입량(톤)	269,767	80,231	10,201	16,767
	매입단가(원/kg)	2,848		975	4,500
	매입금액(백만원)	996,946		9,924	73,993
2020	매입량	249,328	81,744	853	557
	매입단가	2,644		975	4,500
	매입금액	875,333		859	2,821
2021	매입량	257,078	92,899	8,401	2,248
	매입단가	2,609		975	4,700
	매입금액	913,080		8,600	11,722
2022	매입량	321,980	128,020	16,561	18,697
	매입단가	2,261		975	4,700
	매입금액	1,017,375		18,955	87,458
2023	매입계획량	289,058		110,706	18,892
	매입단가	2,480		975	4,800
	매입예산	991,575		20,343	154,429
2024 (p)	매입계획량	450,000		25,000	25,000(p)
	매입예산단가	2,756(p)		975(p)	4,800
	매입예산	1,226,598		30,784	128,343

주: 2019~2022년 결산 기준/ 2023년 매입실적 작성/ 2024년 예산 기준

1) 미곡: 미곡매입가격은 「양곡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수확기 전국 산지쌀값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2) 밀: (매입량·매입금액) 2019~2023년 해당연도 국산 밀 매입 및 정산 결과 기준(aT), 2024년 예산 기준 / (매입단가) 2019~2023년 국산 밀 양호 기준, 2024년 국산 밀 제면용 1등 기준

3) 콩: 연산 기준으로 작성, 매입금액은 물품대 기준, 매입단가는 대립종 특등 기준 수매단가 기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2] 2027년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률 목표¹⁰⁾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2027년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률 목표>

(단위: %)

품 목	'27년 목표치
식량자급률(식용곡물)	55.5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	27.0
열량(칼로리) 자급률	50.0
쌀	98.0
보 리	34.6 / 33.1
밀	8.0 / 5.0
콩	43.5 / 11.6
옥수수	8.2 / 1.7
서 류	109.5 / 102.5
축산물(육류)	66.5
- 쇠고기	37.1
- 돼지고기	72.6
- 닭고기	82.4
우유 및 유제품	47.7
계 란	98.6
사 료	38.2
- 배합사료	24.2
- 조사료	84.6
채소류	89.6
과실류	75.3

* 곡물류는 양곡연도, 이외 품목은 회계연도 기준 / 서류는 '생체중(生體重)' 기준

** 보리·밀·콩·옥수수·서류 등은 식량자급률 / 곡물자급률 순

10) [시행 2023. 4. 30.]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32호, 2023. 4. 24., 제정]

[참고자료 3] 쌀 생산량 현황 및 수확기 산지쌀값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쌀 생산량 현황

(단위: 천톤)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생산량(A)	4,197	3,972	3,868	3,744	3,507	3,882	3,764	3,702
수요량(B)	3,898	3,822	3,806	3,756	3,604	3,614	3,609	3,607
초과생산량 (A-B)	299	150	62	△12	△97	268	155	9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수확기(10~12월) 전국평균 산지쌀값 현황

(단위: 20kg, 정곡 기준)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산지 쌀값	단순 평균	38,303	48,392	47,491	54,121	53,535	46,817	51,810
	비추정 평균	37,328	48,215	47,084	53,456	52,198	45,455	50,699

주: 전국평균 수확기 산지쌀값은 10~12월 산지 쌀값을 평균하여 계산(통계청 조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4] 시장격리곡 매입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최근 7년간(2018~2024.5월) 「양곡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시장격리곡(미곡) 매입현황

(단위 : 정곡/천톤, 억원)

연산	매입시기		평균가격 (조곡 ¹⁾ , 원/40kg)	매입물량 (정곡 ¹ , 천톤)	매입금액 (억원)	매입방법
2021	1차	'22.2.14.~4.8.	63,763(평균낙찰가)	143.5	3,176	입찰
	2차	'22.5.19.~7.20.	60,643(평균낙찰가)	125.3	2,617	입찰
	3차	'22.7.20.~9.8.	57,793(평균낙찰가)	100.7	2,027	입찰
	4차	'22.10.20.~12.31.	54,972(평균낙찰가)	78.6	1,502	입찰
	소계			448.1	9,322	
2022	'22.10.19.~'23.3.31.		64,530(1등급기준)	324	7,322	공공비추과병행

주: 1) 조곡(粗穀)은 수확한 그대로의 알곡이며, 정곡(精穀)은 도정된 곡물(쌀, 보리쌀 등)을 지칭
(농촌진흥청 농업용어사전 <<https://www.nongsaro.go.kr/>>)

2) 2022년산 매입금액은 잠정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연산별 시장격리 물량 및 정산현황 등

(2024. 5. 31. 기준, 단위: 억원, 정곡)

구분	상환후 잔액 (A-B)	매입 물량 (천톤)	남은 물량 (천톤)	매입 자금 (A)	누적 상환액 (B)	상환 시기
<합 계>	28,561	2,925	772	53,759	25,200	-
■ 판매 완료('05산~'17산)	12,485	2,153	-	37,115	24,632	-
■ '05산 시장격리곡(경제지주)	-	144	-	2,433	2,433	'06~'16
■ '08산 시장격리곡(경제지주)	-	100	-	1,714	1,714	'14~'23
■ '09산 시장격리곡(경제지주)	-	566	-	9,299	9,299	'15~'24
■ '10산 시장격리곡(경제지주)	-	86	-	1,411	1,411	'11 (매출중)
■ '14산 시장격리곡(경제지주)	1,918	240	-	4,715	2,798	'19~'28
■ '15산 시장격리곡(농협은행)	3,136	357	-	6,272	3,136	'20~'29
■ '16산 시장격리곡(농협은행)	2,752	299	-	4,587	1,836	'21~'30
■ '17산 시장격리곡(농협은행)	4,679	361	-	6,684	2,005	'22~'31
■ '21산 시장격리곡(농협은행, 경제지주)	8,754	448	448	9,322	568	'27~'36
■ '22산 시장격리곡(농협은행)	7,322	324	324	7,322	-	'27~'3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5] 변동직접지불제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유사 제도

- 개정안의 「적정가격보장제」와 유사한 제도로 '05~'19년까지 운영된 「변동직접지불제」가 있음
 - * 舊 농업소득보전법 제4조(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②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매년 지급하고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 제2조(정의) “변동직접지불금”이란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변동직접지불금 개요

- (대상농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
- (대상농업인)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 농업인: 0.1ha 이상 경작 또는 판매액 120만원 이상(상한: 30ha)
 - ** 법인: 5ha 이상 경작 또는 판매액 4,500만원 이상(상한: 50ha, 들녘: 400)
- (지급 단가) 수확기(10월~익년 1월)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 시 목표가격과의 차액의 85%에서 해당연도 지급받은 고정직불금 단가를 제외한 차액 지급
 - * (목표가격) '05~'12년산: 170,083원/80kg, '13~'17년산: 188,000원, '18~'22년산 : 214,000원
 - ** (고정직불 단가) 100만원/ha, 1ha당 쌀 생산량인 67가마(80kg)를 기준으로 환산시 14,925원/80kg(17년산까지 63가마 기준)
 - *** (변동직불금 단가) (목표가격 - 80kg당 수확기 쌀값) × 85/100 - 80kg당 고정직불금
- (목표가격) 목표가격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5년 단위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변경

<목표가격 산정방식 (舊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9조)>

$$\text{변경 목표가격} = \frac{\text{비교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text{기준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 \times \text{변경 목표가격 산출 직전 목표가격}$$

* 비교연도는 변경 목표가격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고, 기준연도는 비교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며, 절단평균은 최고차·최저치를 제외한 평균으로 함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실적 등

연산별*	농가수(천호)	예산액(억원)	지급총액(억원)
'19년산	641	2,384	2,336
'18년산	650	2,533	1,114
'17년산	675	10,800	5,393
'16년산	685	14,900	14,898
'15년산	685	7,193	7,262
'14년산	671	1,641	1,941
'13년산	697	200	—
'12년산	719	252	—
'11년산	740	620	—
'10년산	781	7,993	7,501
'09년산	815	5,951	5,945
'08년산	1,025	676	—
'07년산	1,016	5,330	2,791
'06년산	1,000	9,501	4,370
'05년산	984	9,096	9,007

* 변동직불금 지급 단가는 10월~익년 1월까지 쌀값이 나와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익년 지급(예: '16년산 → '17년 초 지급)

[참고자료 6] 논타작물 재배 지원제도: 2018~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사업개요

- (사업내용) 기존 쌀 농가가 쌀을 대체하여 논에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시 단위면적 당 일정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
- (지원단가) 쌀 대비 소득차, 영농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 평균단가(270~340만원/ha) 내에서 벼 농사 대비 소득차, 영농 강도 등을 감안하여 차등단가 설정
 - * ①쌀과의 소득차를 보전, ②쌀의 작업 편리성을 대체할 수준의 보전(노동시간 반영), ③작물 전환에 따른 수량 감소 반영, ④기타 전환에 어려운 요소 반영(배수시설 등)

<품목별 지원단가>

(단위: 만원)

구분	조사료	일반·꽃거름	두류	휴경
2018년	400	340	280	—
2019년	430	340	325	280
2020년	430	270	255	210

□ 예·결산 등 실적

(단위: 억원, 천ha)

연도	예산액	집행액	사업실적
2018	1,368	679	26.5
2019	1,505	837	28.6
2020	550	550	21.5